BLACKROCK

정정대비표

1. 대상투자신탁:

블랙록 월드 광업주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블랙록 월드 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(H)

블랙록 월드 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(UH)

2. 주요정정내용: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

1) 비교지수 변경

2) 회계기간 기준일 변경 (집합투자규약에만 해당)

3) 자본시장법 시행령 215조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(집합투자규약에만 해당)

3. 효력발생일: 2020년 8월 15일

4. 변경 내용:

<u>블랙록 월드 광업주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u>

가. 집합투자규약

변경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29 조(투자신탁의 회계기간)	투자신탁의 결산일 변경 사항 반영	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 년간으로 한다	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19년 9월 8일까지는 매 1년간으로 2019년 9월 9일부터의 회계기간은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. 그 이후 회계기간은 매 1년간으로 한다
제 42 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자본시장법 시행령 215조 개정사항 반영	제 42 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. 합병・분할・분할합병 2.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제 42 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 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법령・신탁계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. 합병・분할・분할합병 2.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

		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. 합병・분할・분할합병 2.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. 법 제 184 조제 4 항, 법 제 246 조제 1 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.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.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. 법시행령 제 245 조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	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. 합병・분할・분할합병 2.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. 법 제 184 조제 4 항, 법 제 246 조제 1 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.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.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. 법시행령 제 245 조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지급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보상 금액: 변경 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* 제 37 조 제 3 항 따른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2. 대상 기간: 변경일로부터 6 개월 간. 단,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함. 3. 지급방법: 손실보상금은 제 37 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서에서 인출하며,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. ⑤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지급한다. 다만,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보상 금액: 변경 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* 제 37 조 제 3 항 따른 신탁업자 보수율 2. 대상 기간: 변경일로부터 6 개월 간. 단,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3. 지급방법: 손실보상금은 제 37 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신탁업자가 자신의 판단 및 결정하에 투자신탁재산서에서 인출하며,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. ⑥ 제 4 항 및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

			업자 및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부칙		((신규))	**제1조 (시행일)** 이 신탁계약은 2020년 8월 일에 체결되었으나, 법에 따라 증권신고서(일괄신고서)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.

BLACKROCK

블랙록 월드 광업주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(H)

가. 집합투자규약

변경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29 조(투자신탁의 회계기간)	투자신탁의 결산일 변경 사항 반영	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	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19년 9월 17일까지는 매 1년간으로 2019년 9월 18일부터의 회계기간은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. 그 이후 회계기간은 매 1년간으로 한다
제 42 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자본시장법 시행령 215조 개정사항 반영	제 42 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. 합병・분할・분할합병 2.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. 합병・분할・분할합병 2.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. 법 제 184 조제 4 항, 법 제 246 조제 1 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.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. 법시행령 제 245 조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	제 42 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 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법령・신탁계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. 합병・분할・분할합병 2.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. 합병・분할・분할합병 2.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. 법 제 184 조제 4 항, 법 제 246 조제 1 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.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.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. 법시행령 제 245 조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지급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변경에 이의가

		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	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보상 금액: 변경 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* 제 37 조 제 3 항 따른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2. 대상 기간: 변경일로부터 6 개월 간. 단,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함. 3. 지급방법: 손실보상금은 제 37 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서에서 인출하며,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. ⑤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지급한다. 다만,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보상 금액: 변경 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* 제 37 조 제 3 항 따른 신탁업자 보수율 2. 대상 기간: 변경일로부터 6 개월 간. 단,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3. 지급방법: 손실보상금은 제 37 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신탁업자가 자신의 판단 및 결정하에 투자신탁재산서에서 인출하며,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. ⑥ 제 4 항 및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부칙		((신규))	**제1조 (시행일)** 이 신탁계약은 2020년 8월 일에 체결되었으나, 법에 따라 증권신고서(일괄신고서)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.

나. 투자설명서

변경항목	정정사유	변경전	변경후
요약정보			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비교지수변경	비교지수변경으로 주석추가 및 비교지수 수익률 수치 변경	주 1) 비교지수: 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x 100% 주 5)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비교지수는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비교를 위해 최초설정일자로 소급변경되었습니다. 따라서 이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20 년 8 월 18 일자로 (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 x 90%) + (Call x 10%)에서 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x 100%

BLACKROCK

			로 변경되었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비교지수변경에 관한 사항 추가	변경사항 추가	비교지수 변경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모자형 구조 모펀드	비교지수변경	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× 100%	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x 100%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: 비교지수	비교지수변경	(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× 90%) + (Call × 10%)	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x 100%
모투자신탁 비교지수	비교지수변경	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× 100%	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x 100%
피투자집합투자기구비교지수	비교지수변경	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× 100%	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x 100%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. 연평균 수익률 나. 연도별 수익률	비교지수변경	비교지수변경으로 주석추가 및 비교지수 수익률 수치 변경	주 1) 비교지수: 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x 100% 주 5)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비교지수는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비교를 위해 최초설정일자로 소급변경되었습니다. 따라서 이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20 년 8 월 18 일자로 (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 x 90%) + (Call x 10%)에서 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x 100% 로 변경되었습니다.

다. 간이투자설명서

변경항목	정정사유	변경전	변경후
요약정보			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비교지수변경	비교지수변경으로 주석추가 및 비교지수 수익률 수치 변경	주 1) 비교지수: 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x 100% 주 5)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비교지수는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비교를 위해 최초설정일자로 소급변경되었습니다. 따라서 이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20 년 8 월 18 일자로 (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 x 90%) + (Call x 10%)에서 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x 100% 로 변경되었습니다.

BLACKROCK

블랙록월드광업주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(UH)

가. 집합투자규약

변경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29 조(투자신탁의 회계기간)	투자신탁의 결산일 변경 사항 반영	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 년간으로 한다	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19년 9월 8일까지는 매 1년간으로 2019년 9월 9일부터의 회계기간은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. 그 이후 회계기간은 매 1년간으로 한다
제 42 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자본시장법 시행령 215조 개정사항 반영	제 42 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. 합병・분할・분할합병 2.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. 합병・분할・분할합병 2.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. 법 제 184 조제 4 항, 법 제 246 조제 1 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.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. 법시행령 제 245 조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	제 42 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 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법령・신탁계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. 합병・분할・분할합병 2.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. 합병・분할・분할합병 2.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. 법 제 184 조제 4 항, 법 제 246 조제 1 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.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.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. 법시행령 제 245 조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지급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변경에 이의가

		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	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보상 금액: 변경 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* 제 37 조 제 3 항 따른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2. 대상 기간: 변경일로부터 6 개월 간. 단,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함. 3. 지급방법: 손실보상금은 제 37 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서에서 인출하며,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. ⑤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지급한다. 다만,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보상 금액: 변경 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* 제 37 조 제 3 항 따른 신탁업자 보수율 2. 대상 기간: 변경일로부터 6 개월 간. 단,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3. 지급방법: 손실보상금은 제 37 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신탁업자가 자신의 판단 및 결정하에 투자신탁재산서에서 인출하며,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. ⑥ 제 4 항 및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부칙		((신규))	**제1조 (시행일)** 이 신탁계약은 2020년 8월 일에 체결되었으나, 법에 따라 증권신고서(일괄신고서)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.

나. 투자설명서

변경항목	정정사유	변경전	변경후
요약정보			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비교지수변경	비교지수변경으로 주석추가 및 비교지수 수익률 수치 변경	주 1) 비교지수: 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in KRW x 100% 주 5)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비교지수는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비교를 위해 최초설정일자로 소급변경되었습니다. 따라서 이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20 년 8 월 18 일자로 (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 x 95%) + (Call x 5%)에서 MSCI ACWI Metals and

BLACKROCK

			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in KRW x 100% 로 변경되었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비교지수변경에 관한 사항 추가	변경사항 추가	비교지수 변경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모자형 구조 모펀드	비교지수변경	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× 100%	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x 100%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: 비교지수	비교지수변경	(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× 95%) + (Call × 5%)	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in KRW x 100%
모투자신탁 비교지수	비교지수변경	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× 100%	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x 100%
피투자집합투자기구비교지수	비교지수변경	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× 100%	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x 100%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. 연평균 수익률 나. 연도별 수익률	비교지수변경	비교지수변경으로 주석추가 및 비교지수 수익률 수치 변경	주 1) 비교지수: 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in KRW x 100% 주 5)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비교지수는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비교를 위해 최초설정일자로 소급변경되었습니다. 따라서 이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20 년 8 월 18 일자로 (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 x 95%) + (Call x 5%)에서 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in KRW x 100% 로 변경되었습니다.

다. 간이투자설명서

변경항목	정정사유	변경전	변경후
요약정보			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비교지수변경	비교지수변경으로 주석추가 및 비교지수 수익률 수치 변경	주 1) 비교지수: 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in KRW x 100% 주 5)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비교지수는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비교를 위해 최초설정일자로 소급변경되었습니다. 따라서 이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20 년 8 월 18 일자로 (Euromoney Global Mining ConstrainedWeights Net Total Return Index x 95%) + (Call x 5%)에서 MSCI ACWI Metals and Mining Net Total Return Index in KRW x 100% 로 변경되었습니다.